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9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9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 법규 정비계획」에 따라 동물복지 위원회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삭제하고 해축사유에 장기치료·질병 등의 사유를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동물복지위원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삭제
- 나. 동물복지위원 사후적 해축사유 신설
- 다. 기타 근거 법령 오류 등 미비점 보완 및 잘못된 용어 및 표현 정비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헌법상 기본법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8조 및 「장애인차별금지법」 제6조
- 2)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

(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-967, 2021. 4. 8.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2. 7. 28. ~ 8. 17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 : 수정의결 (2022. 9. 1.)
- 당초 제5조제2항제5호 중 “조교수이상”을 “조교수 이상의 사람”으로 수정하려 하였으나 띄어쓰기만 수정한 “조교수 이상”으로 수정의결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**조교수이상**”을 “**조교수 이상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**1회에 한하여**”를 “**한 차례만**”으로, “**위원의 남은 기간**”을 “**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**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**”을 “**부위원장은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기록**”을 “**기록한 후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9항 중 “**동물보호 동물복지 · 담당팀장**”을 “**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팀장**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0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미성년자 · 피성년후견인

제5조제10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위원의 위촉을 해제**”를 “**위원을 해촉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질병 · 정신적 제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제5조제12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시행규칙 제15조제7항”을 “시행규칙 제15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[별표1]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 기준”을 “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」 제18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로서</u> 법 제4조 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5. 변호사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<u>조교수이상</u>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5조(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사람으로서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 <u>조교수 이상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
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,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⑤ ~ ⑦ (생략)

⑧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2. 3 (생략)

4.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동물보호 동물복지·담당팀장으로 한다.

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-----

-- 한 차례만 -----

----- 위원 임기의 남은-----.

④ -----
----- 부위원장은 -----
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

----- 기록한 후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-----.

1. 2. 3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⑨ -----
-----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담당팀장-----.

⑩ -----

-----.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6. (생략)

⑪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·2.·3 (생략)

<신설>

⑫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⑬ (생략)

제9조(동물보호센터 감독)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

2. -----
-- 사람

3. -----

----- 사람

4. -----

--- 사람

5. -----

사람

6. (현행과 같음)

⑪ -----
----- 위원을 해촉-----.

1.·2.·3 (현행과 같음)

4. 질병·정신적 제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<삭제>

⑬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동물보호센터 감독) ① -----

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·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·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15조(소요경비의 징수) ①·② (생 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[별표1]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에 따른다.

-- 시행규칙 제15조제4항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소요경비의 징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」 제18조-----
-----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행안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배세희
연 락 처	02-3153-8542